

신안산선 석수역 출입구 추가 신설 촉구 건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김성준 의원 외 16명

나. 의안번호 : 제240호

다. 제출일자 : 2022. 10. 12.

라. 회부일자 : 2022. 10. 21.

2. 주 문

- 금천구 주민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고, 석수역이 향후 환승역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新安山선 석수역 주변 시흥대로 동측에 출입구 추가 신설을 건의함

2. 제안이유

- 新安山선은 '24년말 준공을 목표로 안산에서 여의도를 거쳐 서울역까지 연결하여 수도권 서남부와 동북부의 광역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노선으로 총길이는 50.7km이고, 이 중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19개의

역사와 차량기지 1개소가 설치되는 국토교통부 주관 민자사업임

- 신안산선이 통과하는 금천구에는 전체 역사중 석수역, 시흥사거리역, 독산역, 구로디지털단지역 등 총 4개의 역사가 설치될 예정이고 이중 석수역과 구로디지털단지역은 각각 1호선, 2호선과 환승이 가능하여 금천구는 새로운 지하철 시대를 맞이하게 됨
- 현재 석수역은 일일 평균 약 1만 6천명이 이용하는 역으로 향후 신안산선 완공시 환승역으로서 이용승객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중앙철재상가'가 속한 시흥3동 970번지 일대가 '석수역세권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되는 등 향후 개발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금천구 교통의 주요 결절점이 될 것임
- 하지만 신안산선 이용을 위한 석수역 출입구가 현 시흥대로를 중심으로 서측에만 설치되고 있어 주거지가 다수인 동측에서 금천구 주민이 신안산선을 이용하려면 왕복 10차로인 시흥대로를 가로질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향후 역세권 개발이 완료되어도 시흥대로 동측에 추가적인 출입구 설치가 없다면 매일 수천, 수만명의 시민이 시흥대로를 불필요하게 건너가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함
- 이에 금천구 주민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고 석수역이 제대로 된 환승역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시흥대로 동측에 신안산선 석수역 출입구 추가 설치를 건의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철도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나. 기타사항: 없음

다.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교통정책과 : 원안 동의¹⁾

- 국토부는 출입구 신설로 인한 본선의 사업기간 연장 불가, 사업 타당성 확보 및 원인가 비용부담원칙 충족시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 국토부의 요건대로 신안산선 석수역 추가 출입구 신설의 타당성 확보, 원인가 비용부담 등이 담보된다면 국토부에 건의하겠음

4. 이 송 처

○ 국회, 국토교통부, 서울시

1) 교통정책과-35773('22.12.12.)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건의안은 금천구 주민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고, 석수역이 향후 환승역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신안산선 석수역 주변 시흥대로 동측에 출입구 추가 신설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신안산선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이하 “신안산선”)은 서울 도심과 서남부지역 도시 간의 광역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광역철도²⁾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조 3,055억 원이며 서울시 구간 12.1km을 포함한 노선 구간은 안산~여의도~서울역 등 총 50.7km로 사업추진 방식은 BTO-rs(위험분담형 민간투자사업)³⁾ 방식으로 추진 중임
- 신안산선 노선구간은 1·2단계 구간으로 나뉘며 1단계는 안산~광명~여의

2) 광역철도 정의(「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3) BTO-rs(위험분담형: Build. Transfer. Operate-risk sharing)

- 기존 BTO 사업 방식은 손실, 이익 모두 민간이 100% 책임지는 구조로 민간사업자의 위험도가 높으나 BTO-rs 방식은 손실, 이익을 정부와 민간이 50:50으로 공유하여 사업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음

도(30.9km) 및 송산~시흥시청~광명역(14km) 구간이며, 2단계는 여의도~공덕~서울역(5.8km) 구간으로 계획되어 있음 [붙임1·2 참조]

※ 참고 :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구 분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안산~여의도~서울역(50.7km)	
구 간	〈1단계〉 - 안산~광명~여의도(30.9km) - 시흥시청~광명(10.072km) - 송산차량기지~원시(3.967km)	〈2단계〉 - 여의도~공덕~서울역(5.8km)
규 모	- 정거장 19개역, 차량기지 1개소	- 정거장 2개역(안)
사업기간	- 2019년 ~ 2024년	- 사전타당성 조사 이후, 후속 절차 준비
총사업비	- 4조 3,055억 원	미정
특 징	- 재정사업에서 민자사업으로 전환	미정

- 신안산선은 '10년 12월 국토해양부의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4) 고시를 통해 재정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국가재정 부담을 이유로 기재부와 국토교통부에서 민자사업 적격성에 대한 검토 후 '16년 국토교통부에서 민자사업으로 최종 전환5)하면서 1단계(안산~여의도), 2단계(여의도~서울역)로 구분하고 민자사업인 1단계 구간을 우선 추진6)하여 '19년 9월부터 공사를 진행 중이며 올해 10월 기준 공정률은 약 27% 수준임

- 신안산선 건설사업은 서울을 포함하는 수도권외 광역교통 여건을 향

4)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933호, '10.12.15.)

5) '15.8.17)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신안산선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2023년 개통' : 민자방식 전환 등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6-665호, '16.10.13.)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이하 생략-) ※ 사업추진 방식 BTO-rs 결정 포함

6)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사업실시계획 승인(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446호, '19.8.27.)

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장기간 사업추진에 따른 지역 여건 변화로 해당 노선이 지나가는 일부 서울 구간에서는 출입구 신설 등에 대한 해당 지자체의 요구가 매우 높은 상황임

■ 석수역 출입구 추가 신설 관련

- 동 건의안은 신안산선 석수역에 출입구 추가 신설을 촉구하는 것으로 신안산선 전체 역사 중 금천구에는 석수역, 시흥사거리역, 독산역, 구로디지털역 등 총 4개 역사가 건설될 예정으로 준공 이후에는 금천구 교통복지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임
- 이 중 석수역의 건설계획 현황을 보면 정거장(지하2층), 지상대합실(1층/지하1층), E/V 8대, 외부 출입구 등을 건설할 계획이며 1호선 석수역과 환승이 가능한 구조로 건설될 예정임
- 하지만 신안산선 석수역의 금천구 행정구역 출입구는 건물형 출입구 1개뿐이며 이마저도 시흥대로 기준 서쪽에 위치하고, 주거지가 밀집한 동쪽에는 출입구가 없어 신안선 준공시 석수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많은 불편이 예상된다고 할 것임
- 또한, 시흥대로 동쪽에는 중앙철재종합상가 시장정비사업 등이 추진 중으로 해당 정비사업 완료 시에는 유동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신안산선 석수역 출입구 추가 신설에 대한 건의는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 참고 : 신안산선 석수역 출입구 신설 관련 _ 예상 위치도



- 당초 신안산선 건설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던 당시에는 금천구 지역에 출입구가 2개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민자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출입구가 1개로 축소된 것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적도 다수 있었는 바, 금천구의 지역 상황을 고려하고 시민들의 광역철도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서 석수역 출입구 추가 신설에 대해서는 긍정적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실제로 안산시에서는 한양대학교 부지에 신안선 한양대역(가칭) 출입구 신설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확보 이후 국가철도공단, 넥스트레인(주), 한양대와 협약서를 맺고⁷⁾ 출입구 신설 비용은 안산시가 부담⁸⁾

7) '신안산선 한양대정거장(가칭) 출입구 신설사업' 협약식('22.10.5.) 안산시청 제1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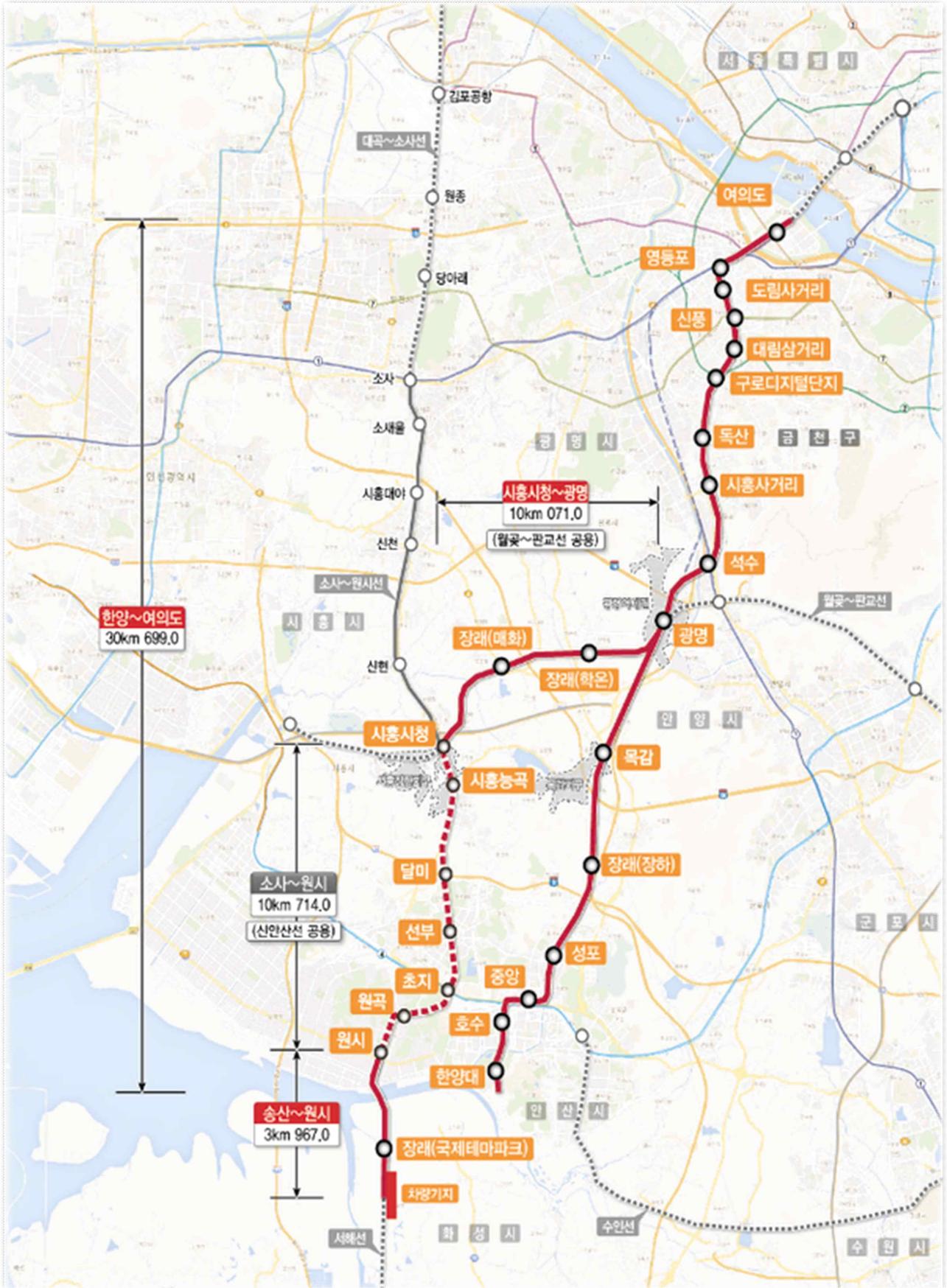
'신안산선 한양대역 출입구, 에리카 캠퍼스 안에 만든다'_연합뉴스(22.10.5.)

8)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수익자·원인자의 비용부담) ③ 국가 이외의 자의 요구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구자의 부담으로 한다.

하기로 하였으며, 추후 신설 역사에 대한 운영협약도 맺기로 한 점을 고려할 때 석수역 출입구 신설과 관련한 타당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금천구는 출입구 신설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서울시 또한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석수역 출입구 신설을 위한 노력과 함께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임

【붙임1】 신안산선 복선전철 노선도



【붙임2】 광역철도 사업 추진 절차

